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험연구,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 방제 병해충 이용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2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험연구,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 방제 병해충 이용	2
2.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	11
3. 벌칙 규정 신설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13.
3. 회 부 일 : 2026.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험연구,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 방제 병해충 이용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다.</u> <u>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u> <u>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약제 생산을 위한 경우</u> <u>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u> <u>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해서는 아니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u>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8. (생 략)	<u>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u> <u>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u> <u>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의 병해충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u> 제45조의3(청문)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u> 7.·8.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¹⁾이 발생하여 폐원하게 되는 등 병해충²⁾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

(단위: 호, ha)

연도	발생			방제	
	농가	면적	기초지자체 수	농가	면적
2016년	17	15.1	2	32	19.7
2017년	33	22.7	2	55	31.8
2018년	67	48.2	6	135	80.2
2019년	188	131.5	10	188	131.5
2020년	744	394.4	15	747	395.1
2021년	618	288.9	22	619	289.4
2022년	245	108.2	19	245	108.2
2023년	234	111.8	24	234	111.8
2024년	162	86.9	24	162	86.9
2025년	135	55.4	24	135	55.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현행 「식물방역법」은 처음 국내에 유입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규정할 뿐³⁾,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

1) 사과·배·모과 등 장미과(科) 식물에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원인균인 'Erwinia amylovora' 감염을 통하여 나타남

2) “병해충”이란 ①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②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③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함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3)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시험·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대상 병해충은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⁴⁾ 방제 대상 병해충은 발견 시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⁵⁾,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개정안은 시험연구, 방제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⁶⁾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제

4)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5)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잡종(雜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 유·반출금지, 폐기의무 등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에 수반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이용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구비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이용 목적	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
	2. 부령으로 정한 방제약제 생산
	3. 농업유전자원 확보
이용상 의무	1. 허가받은 시설 밖 병해충 유출 또는 반출 금지
	2. 이용 종료 후 해당 병해충 폐기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회수·폐기 명령 이후 허가취소 또는 2년 내 허가 제한 (취소 시 청문필요)

이와 같이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근거가 마련되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활용한 시험연구, 약제 제조 등이 촉진되어 과수화상병 등의 병해충 방제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병해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해충 이용시설의 기준, 안전관리 절차, 병해충 폐기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안전기준, 시설 기준⁷⁾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병해충 폐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⁸⁾

둘째, 개정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 또는 반출한 자와 달리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칙⁹⁾과 별개의 의무이행수단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병해충을 폐기하지 않으면 추후 병해충의 유출·반출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행정대집행¹⁰⁾, 직접강제¹¹⁾ 등 행정상 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특히, 안 제31조의8제2항에서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 또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방제 대상을 폐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47조제10호의4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신설하고 있음.

10)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수단으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함(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415).

11)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425).

【 폐기 절차 미이행시 의무이행수단을 규정한 입법례 】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병해충의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동법 제7조의3¹²⁾, 제30조의2¹³⁾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방제 대상 병해

12) 「식물방역법」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

충”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⁴⁾.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위한 병해충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9호)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 위원회에 계류중¹⁵⁾이므로, 추후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서삼석의원안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서삼석의원안	개정안(김선교의원안)
인허가 유형	신고	허가
이용목적	시험·연구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
	예방약제 제조	방제약제 생산
	-	농업유전자원 확보
이용의무	미규정	유출·반출, 폐기의무 규정
제재수단	미규정	허가 취소 또는 허가제한
행정벌	미신고 시 과태료	무허가, 유출·반출, 폐기명령 등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및 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4) 이 경우, 입법경제 차원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약칭할 필요도 있어 보임.

15) 2025.07.25. 발의, 2025.09.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⁶⁾

1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2.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u>식물검역기관의 장</u>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u> 의----- ----- -----.

현행 「식물방역법」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¹⁷⁾)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그런데, 현행법은 권한 재위임의 주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여, 또 다른 수입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기관에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¹⁹⁾

이에 개정안은 권한 재위임의 주체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여, 농

17)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약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함)

18) 「식물방역법」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19) 다만, 현행법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현행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권한 재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상황임

촌진흥청장이 그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재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의 제도의 균형성 측면을 제고하고,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규정하는 사항이 ‘위임’이 아닌 ‘재위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문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도록 수정하여 재위임 대상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u>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u>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	② <u>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

참고로, 현행법 제46조제1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

연번	위임된 권한	
	모법 근거규정	권한 내용
1	법 제30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 내의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신고 접수
2	법 제31조	병해충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3	법 제31조의5	‘공항·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분포조사
4	법 제31조의7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5	법 제32조제5항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6	법 제33조의4제1항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7	법 제33조의5제1항	예방교육 실시
8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방제명령 및 식물방제관(지자체 제외)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9	법 제37조의2제1항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10	법 제38조	방제명령 등에 따른 손실보상
11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 보조
12	법 제42조제1항·제2항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13	법 제43조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14	법 제50조제1항제4호	방제명령(폐기명령 제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5	법 제50조제1항제4호	식물방제관(지자체 제외)의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6	법 제50조제1항제4호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의 병해충 발생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7	법 제33조의5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18	법 제33조의5	병해충 예방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9	법 제43조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3. 벌칙규정 신설

개정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규정 신설에 맞춰, 무허가 이용자, 유출 또는 반출 금지 의무 위반자, 폐기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0조의2부터 1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 (생략)	제47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용한 자</u> <u>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u> <u>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u>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안전하게 시험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 제31조의8 각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그 제재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어떤 것을 부과할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²⁰⁾ 이는 위법성의 정도, 입법목적, 제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임.

【 행정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참고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음.

20)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는 위반행위 】

연번	위반행위
1호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
2호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
3호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
4호	병해충 등 금지품을 수입
4호의2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 하거나 반출
4호의3	수입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이나 소독 명령을 미이행
5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
6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7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회수·소독·폐기·반송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
8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
9호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 미신고
10호	경유물품의 소독· 폐기·반송·반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
11호	방제 대상 병해충의 폐기명령 위반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문 의 처

02)6788-5416